

붙임 3 학습교재 최종 수정내역

우편일반

【 제1편 국내우편 】

- □ 4페이지 [제1장 총론, 1. 우편의 의의 및 사업의 특성]
- 0 1-5. 가. 서신독점권

현행

2) 독점권의 대상은 서신이다. "서신"이라 함은 의사전달을 위하여 특정인이나 특정 주소로 송부하는 것으로서 문자 · 기호 · 부호 또는 그림 등으로 표시한 유형의 문서 또는 전단을 말한다.(우편법 제1조의2 제7호)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우편법 시행령」제3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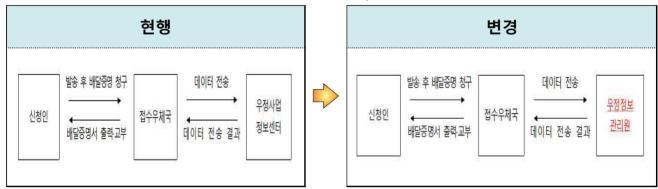


변경

2) 독점권의 대상은 서신이다. "서신"이라 함은 의사전달을 위하여 특정인이나 특정 주소로 송부하는 것으로서 문자ㆍ기호ㆍ 부호 또는 그림 등으로 표시한 유형의 문서 또는 전단을 말한다.(우편법 제1조의2 제7호)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로 한 다.(「우편법 시행령」제3조)

□ 41페이지 [제4장 국내우편물의 부가서비스, 3. 증명취급]

ㅇ 3-2. 라. 발송 후의 배달증명 청구, 2) 처리절차



□ 50페이지 [제5장 그 밖의 우편서비스, 2. 전자우편서비스]

ㅇ 2-4. 라. 기관연계시스템 접수

현행

각 기관에서 외부연계(행정공동망, ESB, 상용솔루션)를 통해 <mark>정보센터로</mark>



변경

각 기관에서 외부연계(행정공동망, ESB, 상용솔루션)를 통해 우정정보관리원으로

□ 58페이지 [제5장 그 밖의 우편서비스, 3. 기타 부가서비스]

ㅇ 3-7. 1) 우편 서비스

현행

- 현금배달, <mark>주소</mark>이전서비스, 수취인 배달 장소 변경, 무인우체국 가입, 전자지갑 등 부가서비스



변경

- 현금배달, <mark>주거</mark>이전서비스, 수취인 배달 장소 변경, 무인우체국 가입, 전자지갑 등 부가서비스

□ 59페이지 [제5장 그 밖의 우편서비스, 3. 기타 부가서비스]

○ 3-7. 3) 우체국EMS·국제우편

현행

- 국제우편스마트접수: 국제특급(EMS), EMS프리미엄, 국제소포(항공·선편), 등기소형포장물(항공)



변경(추가)

- 국제우편스마트접수: 국제특급(EMS), EMS프리미엄, 국제소포(항공·선편), 등기소형포장물(항공), K-Packet

□ 64페이지 [제6장 우편에 관한 요금, 2. 요금후납 우편물]

0 2-3. 다. 담보금 제공 면제의 취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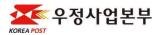
현행

- 1) 담보금 제공을 면제받은 후 2년 안에 요금납부를 2회 체납한 경우
- 가) 담보금 1/2 면제 대상인 경우 담보금 제공 면제 취소
- 나) 담보금 <mark>전액</mark> 면제 대상인 경우 담보금 제공 1/2 면제
- 2) 담보금 제공을 면제받은 후 2년 안에 요금납부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 담 보금 제공 면제 취소
- 3) 우체국소포 및 국제특급(EMS) 계약자인 경우
- 가) 신용보증 및 신용조사 전문기관의 평가 결과가 B등급 미만으로 <mark>떨어진</mark> 경우
- 나) 면제 받은 후 납부기준일부터 요금을 1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 다) 면제 받은 후 연속 2회 이상 체납하거나, 최근 1년 안에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 4) 계약우체국장은 <mark>체납을</mark> 이유로 면제 취소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 담보금 면제 혜택을 2년간 금지할 수 있다.

변경

- 1) 담보금 제공을 면제받은 후 2년 이내에 요금을 2회 이상 체납한 경우
- 가) 담보금 1/2 면제 대상: 담보금 제공 면제 취소 나) 담보금 전부 면제 대상: 담보금 제공 1/2 면제로 변경
- 2) 담보금 전부면제 대상이 담보금 제공을 면제받은 후 2년 이내에 요금을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담보금 제공 면제 취소
- 3) 우체국소포 및 국제특급(EMS) 계약자인 경우 가) 신용보증 및 신용조사 전문기관의 평가 결과가 B등급 미만으로 <mark>하락한</mark> 경우
- 나) 담보금 제공을 면제받은 후 요금납부 기준일부터 요금을 1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 다) 담보금 제공을 면제받은 후 요금을 연속 2회 이상 체납하거나,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 4) 계약우체국장은 <mark>우편요금 체납을</mark> 이유로 면제 취소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 담보금 면제 혜택을 2년간 금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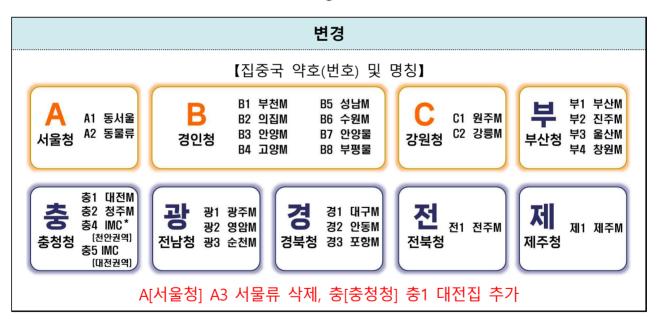
【 제2편 우편물류 】

□ 11페이지 [제1장 발착 및 운송작업 3. 우편물의 구분]

ㅇ 바. 집배코드 1) 나) 구조







□ 14페이지 [제1장 발착 및 운송작업 4. 발송작업]

ㅇ 나. 우편물의 발송 6) 가) (1)

현행

(1) 교환에 참가하는 <mark>우체국</mark>끼리 직접 교환 할 수 있도록 생산된 운반차를 교환센터에 서 직접 교환하는 작업을 말한다.



변경

(1) 교환에 참가하는 집중국끼리 직접 교환 할 수 있도록 생산된 운반차를 교환국에서 직접 교환하는 작업을 말한다.

□ 18페이지 [제1장 발착 및 운송작업 5. 우편물의 운송]

ㅇ 나. 종류 2) 나) 표 상단

현행				
 우행을	감 편	우편물의 발송량이 적어 정기편을 운행		
변경할	· 증	하지 아니하는 것 우편물의 과다 증가		
때	등으로 정기편 외 추 가로 운행하는 것			



변경(추가)							
- - - - - - - - -	감	편	우편물의 발송량이 적어 정기편을 운행하지 아니 하는 것				
변경할때	Klo	편	우편물의 과다 증가 등으로 정기편 외 추가로 운행하는 것				
	결	편	해당 편을 운행하지 않음				

ㅇ 나. 종류 2) 라)

현행

이후에도 발송할 잔량이 있는 경우 1순위~3순위(※ 19p 참조) 우편물에 대하여는 운송물량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별도의 운송편을 확보하여 즉시 발송한다.



변경

이후에도 발송할 잔량이 있는 경우 1순위~3순위(※ 13~14p '우편물 발송의 우선순위' 참조) 우편물에 대하여는 운송물량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별도의 운송편을 확보하여 즉시 발송하여야 한다.



□ 20페이지 [제1장 발착 및 운송작업 5. 우편물의 운송]

ㅇ 라. 운송용기 2) 표 하단

현행				
우편된	일반자루	일반우편물 (통상 · 소포) 담기	크기에 따 라 가호, 나호	
자 루 	특수자루	부가취급우편 물 담기	가호, 나호	

			변경	
>	우 편	일반우편 자루	일반우편물 (통상 및 소포) 담기	크기에 따라 가호, 나호
	자 루	특수우편 자루	등기통상 및 준등기우편물 담기	가호, 나호

□ 22페이지 [제2장 우편물 수집 및 배달 2. 우편물의 수집]

ㅇ 나. 우체통의 수집 1) 가)

현행	변경(삭제)
가) 우체통에서 수집할 때의 유의사항 (「우편업무 규정」제311조)	가) 우체통에서 수집할 때의 유의사항

□ 23페이지 [제2장 우편물 수집 및 배달 2. 우편물의 수집]

ㅇ 나. 우체통의 수집 1) 나)

현행	변경(삭제)
나) 수집확인증을 사용한 우체통 수집 (「우편업무 규정」제312조)	나) 수집확인증을 사용한 우체통 수집

ㅇ 나. 우체통의 수집 1) 다) (2) (가)

현행		변경
우체통의 우편물을 수집한 후		우체통 <mark>을 열어</mark> 우편물을 수집한 후 개인휴대
개인휴대용단말기 (PDA)를 이용하여		용 단말기(PDA)를 이용하여 바코드 스캔작
바코드 스캔작업을 실시한다.		업을 실시한다.



□ 30페이지 (제2장 우편물 수집 및 배달 3. 우편물의 배달)

ㅇ 라. 배달의 우선순위 2)

현행

제1순위부터 제3순위까지의 우편물 중 한 번에 배달하지 못하고 잔량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편에서 다른 우편물에 우선하여 배달한다.



변경

제1순위부터 제3순위까지의 우편물 중 한 번에 배달하지 못하고 잔량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편에서 다른 우편물에 우선하여 배달해야 한다.

□ 35페이지 (제2장 우편물 수집 및 배달 3. 우편물의 배달)

ㅇ 바. 고층건물 내 우편물의 배달 1)

현행 우편수취함의 설치



고층건물우편수취함의 설치

□ 48페이지 (제2장 우편물 수집 및 배달 6. 그 밖의 부가취급우편물의 배달)

ㅇ 나. 계약등기우편물의 배달 2) 마)

현행 배달결과는 우정사업정보센터에서 5년간 전산

배달결과는 <mark>우정사업정보센터</mark>에서 5년간 전산 시스템에 보존한다.



변경

배달결과는 <mark>우정정보관리원</mark>에서 5년간 전산시 스템에 보존한다.

□ 54페이지 (제2장 우편물 수집 및 배달 7. 배달하지 못한 우편물의 처리)

ㅇ 나. 재배달우편물의 처리 3) 가)

현행

대상: 수취인의 희망에 따라 재배달을 시도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배달하지 못해 다시 보관처리를 하였음에도 창구교부 기간(처음 배달한 다음 날부터 4일, 보관기간) 중 교부를 요청하지 않은 우편물

변경

대상: 수취인의 희망에 따라 재배달을 시도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배달하지 못해 다시 보관처리를 하였음에도 창구교부 기간(처음 배달시도한 날의 다음 날부터 4일, 보관기간) 중 교부를 요청하지 않은 우편물

ㅇ 나. 재배달우편물의 처리 4)

현행

- 4) 등기우편물 재배달 희망일 배달
- ※ 일반적인 등기우편물과 달리 수취인이 별도로 재배 달 희망일 배달을 청한 경우에 한함
- 가) 1차 방문 때 배달하지 못한 등기우편물을 수취인이 따로 날짜를 정하여 우체국에 재배달을 요청하면 요청한 날에 우편물을 재배달할 수 있다.
- 나) 배달일자 지정기한
- (1) 1차 방문한 날부터 5일까지 가능하고, 다만 부득 이한 경우에는 15일까지 연장 가능하다.
- (2) 배달일자 지정일에도 배달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2일 동안 보관하고 수취인이 교부 를 신청하지 않은 때에는 반송한다.
- 다) 집배부서에서는 '등기우편물 재배달희망일 신청접 수대장'을 비치하고 접수내용을 해당 집배원에게 알 려주고 해당 집배원은 접수명세를 직무노트에 기록 한 다음 해당 우편물을 부기취급우편물 취급부서 등 보관부서에 인계하였다가 재배달하는 날에 받아서 배달한다.
- 라) 특수계 등 보관부서에서는 재배달 희망일자별로 구분하여 별도 보관하며 해당 일에 집배원에게 넘겨 준다.

변경(삭제)

"전체 삭제"



□ 56페이지 (제2장 우편물 수집 및 배달 7. 배달하지 못한 우편물의 처리)

ㅇ 라. 우편물의 전송 4) 다이어그램 상단

현행 변경 전출입 등 거주지가 변경 전출입 등 거주지가 변경된 된 경우 주거이전신고사항 경우 주거이전신고사항을 우 ① 신고사항 ① 신고사항 을 우체국 창구, 집배원, 전 체국 창구, 집배원, 전입신고 접수 접수 입신고(행정안전부) 등을 (행정안전부), 인터넷우체국 통하여 접수 등을 통하여 접수 접수된 주거이전신고서는 접수된 주거이전신고서는 우 우체국 창구의 경우 당 우 체국 창구의 경우 당 우체국 체국에서 에서 ② 우편물류 ② 우편물류 집배원 접수의 경우 집배 집배원 접수의 경우 집배국 시스템 등 시스템 등 국에서 우편물류시스템에 에서 우편물류시스템에 등록 록 록 등록 전입신고(행정안전부), 인터넷 전입신고(행정안전부) 접수 우체국 접수건의 경우 자동 건의 경우 자동 전산 등록됨 전산 등록됨

□ 57페이지 (제2장 우편물 수집 및 배달 7. 배달하지 못한 우편물의 처리)

ㅇ 라. 우편물의 전송 4) 가) (3)

현행

(3) 담당 집배원은 인계받은 주거이전신고목록을 확인하고 개인별 집배정밀도 뒷면에 주소 변경 사항을 정리한다. 정리된 신고서는 책임자에게 넘겨주며 책임자는 반환받은 주거이전신고서를 일별 · 월별로 묶어 1년 동안 보관한 보관 후 폐기한다.

변경(삭제)

(3) 담당 집배원은 인계받은 주거이전신고목록을 확인하고 개인별 집배정밀도 뒷면에 주소 변경 사항을 정리한다. 정리된 신고서는 책임자에게 넘겨주며 책임자는 반환받은 주거이전신고서를 일별 · 월별로 묶어 1년 동안 보관 후 폐기한다.

ㅇ 라. 우편물의 전송 4) 나) (2)

혀햀

철회신청 가능 관서 : 주거이전신고를 접수한 우체국이나 구주소지 배달우체국 * 다만, 인터넷우체국이나 전입신고에 따른 접수분에 대하여는 이를 접수창구로 봄

변경(삭제)

철회신청 가능 관서 : 주거이전신고를 접수한 우체국이나 구주소지 배달우체국

ㅇ 라. 우편물의 전송 4) 다) (3)

현행

(3) 주거이전신고우편물 중 지속적으로 계속 보내오는 우편물과 고지서 등 시한성 우편물에 대해서는 담당 집배원이 대상우편물을 골라내어 전송에 필요한 부전지를 붙여 책임자에게 넘겨주고 주소변경에 관한 내용을 발송인에게 통보한다.



(3) 주거이전신고우편물 중 지속적으로 계속 보내오는 우편물과 고지서 등 시한성 우편물에 대해서는 담당 집배원이 대상우편물을 골라내어 전송에 필요한 부전지를 붙여 책임자에게 넘겨준다.



【 제3편 국제우편 】

- □ 2페이지 (제1장 국제우편 총설 2. 우편에 관한 국제기구)
 - o 가. UPU의 창설 2)

현행

2023년 10월 현재 192개 회원국으로 구성됨



변경

2025년 2월 현재 192개 회원국으로 구성됨

- □ 13페이지 (제1장 국제우편 총설, 3. 국제우편물의 종류 및 취급우체국의 구분)
 - ㅇ 3-1. 개요 나. 마) ※

현행

※ 부피중량: 항공우편물에만 적용되는 개념으로 대상우편물은 소형포장물(항공), 소포(항공), K-Packet, 국제특급(비서류) 이며, ... 요금을 적용



변경

※ 부피중량 : 원칙적으로 항공우편물에 적용되는 개념으로 대상우편물은 소형포장물(항공), 국제소포(항공), K-Packet, 국제특급(비서류)이며, ... 요금을 적용

- □ 26페이지 (제1장 국제우편 총설, 3. 국제우편물의 종류 및 취급우체국의 구분)
 - ㅇ 3-4. K-Packet, 마.

현행

K-Packet 접수 가능 국가 ('25.1.20. 기준) :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미국, 베트남, 브라질, 싱가포르, 영구, 호주, 인도네시 아, 일본, 중국, 캐나다, 태국, 대만, 프 랑스, 필리핀, 홍콩



변경

K-Packet 접수 가능 국가 ('25.1.20. 기준):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미국, 베트남, 브라질, 싱가포르, 영국, 호주,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캐나다, 태국, 대만, 프랑스, 필리핀, 홍콩

□ 29페이지 (제1장 국제우편 총설, 3. 국제우편물의 종류 및 취급우체국의 구분)

ㅇ 3-6. 해상특송우편물(POST Sea Express), 나. 한일해상특송우편물

현행				
구 분	규격 및 중량			
유팩 (Yu -Pack)	o 규격 - 세변의 합(길이+폭+두께): 1600mm 이하 o 중량 - 최대 10kg 이하 ※ 실제 중량과 체적 중량(길이*폭*두께÷6,000) 중 더 무거운 중량 적용			

	변경(삭제)				
	구 분	규격 및 중량			
•	유팩 (Yu- Pack)	o 규격 - 세변의 합(길이+폭+두께) : 1600mm 이하 o 중량 - 최대 10kg 이하 ※ 실제 중량과 체적 중량(길이*폭*두께÷6,000) 중 더 무거운 중량 적용			

□ 40페이지 (제2장 국제우편물 종별 접수요령. 2. 종류별 접수 방법)

○ 2-4. 국제특급우편물(EMS)의 접수 가. 2) 라)

현행		변경
라) 세관표지(CN22, 서류용 주소기표지)		라) 세관신고서(CN22, 서류용 주소기표지)

□ 41페이지 (제2장 국제우편물 종별 접수요령, 2. 종류별 접수 방법)

ㅇ 2-4. 국제특급우편물(EMS)의 접수, 나. 표 <EMS 접수시 안내 및 확인 시항>

현행	변경(추가)
세관 신고 o 내용품 가격(물품가)은 미화 서 (USD)로 기재 작성	세관 신고 o 내용품 가격(물품가)은 미화 서 (USD)로 기재(종이 기표지 기준) 작성

□ 52페이지 (제3장 국제우편 요금, 1. 개요)

ㅇ 1-3. 국제우편요금 적용방식 나. 2) 대상

현행	변경
2) 대상(항공우편물에 적용): 소형포장물, K-Packet, 국제소포, 국제특급(비서류)등 물품을 포함하는 국제항공우편물 및 민간과 제휴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EMS프리미엄, 국제물류서비스)	2) 대상 : 소형포장물(항공), K-Packet, 국제소포(항공), 국제특급(비서류), EMS프리미엄(비서류) ※ 국제항공우편물 및 민간과 제휴하여 제공하는 국제우편 서비스 일부에 적용

□ 63페이지 (제4장 부가서비스 및 제도, 1. EMS 배달보장 서비스)

ㅇ 1-2. 배달보장서비스 실시국(카할라 우정연합 회원국)

현행

한국, 일본, 미국, 중국, 호주, 홍콩, <mark>영국,</mark> 스페인, 프랑스, 태국, 캐나다 등 11 10개 국



변경

한국, 일본, 미국, 중국, 호주, 홍콩, 스페인, 프랑스, 태국, 캐나다 등 10개국

□ 67페이지 (제4장 부가서비스 및 제도, 3. 사전 통관정보 제공)

ㅇ 3-2. 개요, 나. 대상 우편물

현행

나. 대상 우편물 :

비서류(국제소포우편물, K-Packet, EMS [비서류], 해상특송우편물[한중, 한일]), EMS(서류), 소형포장물



변경(추가)

나. 대상 우편물 :

비서류(국제소포(항공,선편)우편물, K-Packet, EMS[비서류], 해상특송우편물 [한중, 한일]), EMS(서류), 소형포장물

□ 68페이지 (제4장 부가서비스 및 제도, 3. 사전 통관정보 제공)

○ 3-3. 유럽연합의 ICS2 가. 개요 1), 2)

현행

- 1) ICS2 R2 대상국가로 발송하는 우편물은 도착국 가 세관으로부터 반드시 승인 완료(AC)를 받은 경 우에만 운송수단 탑재 및 발송 가능
- ※ AC(Assessment Complete 상대국가에서 승인완료 운송수단 탑재가능)
- 2) 도착국 세관은 사전통관정보를 통해 안전성.위험성 등을 확인하여 승인완료
- (R2 이후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추가 지침이나 안내가 없어 표기 생략)

변경(삭제)

- 1) ICS2 № 대상국가로 발송하는 우편물은 도착국 가 세관으로부터 반드시 승인 완료(AC)를 받은 경우 에만 운송수단 탑재 및 발송 가능
- ※ AC(Assessment Complete 상대국가에서 승인완료 운송수단 탑재가능)
- 2) 도착국 세관은 사전통관정보를 통해 안전성.위험 성 등을 확인하여 승인완료
- (R2 이후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추가 지침이나 안내가 없 이 표기 생략)

□ 71페이지 (제4장 부가서비스 및 제도, 4. 국제우편 요금감액 제도)

ㅇ 4-2. 취급요건과 감액범위 가. 특급우편

현행

가. 특급우편(EMS·EMS프리미엄)

(단위: 1개월, 만원)



변경(추가)

가. 특급우편(EMS·EMS프리미엄)

(단위: 1개월, 1회, 만원)

○ 4-2. 취급요건과 감액범위 나. K-Packet, 등기소형포장물

현행

※ 등기소형포장물 감액은 계약고객에 한하여 적 용한다.



변경(추가)

※ K-Packet 및 등기소형포장물 감액은 계약고객 에 한하여 적용한다.

□ 73페이지 (제4장 부가서비스 및 제도, 5. 그 밖의 주요 부가서비스 및 제도)

0 5-1. 국제우편스마트접수 나. 대상우편물

현행

나. 대상우편물 : EMS(EMS프리미엄), 국제 소포(항공·선편), 등기소형포장물(항공)



변경(추가)

나. 대상우편물 : EMS(EMS프리미엄), 국제소 포(항공·선편), 등기소형포장물(항공),

K-Packet

□ 90페이지 (제6장 각종 청구 제도, 2. 국제우편 손해배상제도)

ㅇ 2-7. 손해배상 업무처리 순서 및 담당기관, 나.

현행

4) 손해배상금 지급처리 : 우정사업정보센터



변경(삭제)

4) 손해배상금 지급처리 : 우정사업정보센터

□ 92~94페이지 (제7장 국제우편물 및 국제우편요금의 반환 1. 국제우편물의 외부기록사항 변경·정정 또는 반환)

ㅇ 1-2. 청구 개요, 라. 1) 나)

현행

(국제우편물류센터, <mark>부산우체국</mark>, 인천해상교 환우체국)에 청구서 도착이 가능한지 확인



변경

(국제우편물류센터, <mark>부산국제우체국</mark>, 인천해 상교환우체국)에 청구서 도착이 가능한지 확 인)

○ 1-2. 청구 개요, 라. 1) 다)

혀행

국제우체국에서 외국으로 발송 준비완료 전에 청구서가 국제우체국에 도착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외국으로 발송준비 완료 후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변경

국제우체국에서 외국으로 발송 준비완료 전에 청구서가 교환국에 도착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외국으로 발송준비 완료 후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ㅇ 1-2. 청구 개요, 라. 1) 라)

현행

외국으로 발송 준비 완료 전과 완료 후의 상태가 정확하게 판단이 되지 않을 경우 국제우체국 담당에게 직접 전화로 확인하 여 결정



변경

외국으로 발송 준비 완료 전과 완료 후의 상 대가 정확하게 판단이 되지 않을 경우 교환 국 담당에게 직접 전화로 확인하여 결정

○ 1-2. 청구 개요, 라. 2) 가) 나)

현행

- 가) 우편물이 접수국에서 <mark>국제우체국으로</mark> 발송하기 전
- 나) 우편물이 접수국에서 떠나 국제우체국 으로 가고 있거나 도착한 경우,



변경

- 가) 우편물이 접수국에서 교환국으로 발송 하기 전
- 나) 우편물이 접수국에서 떠나 교환국으로 가고 있거나 도착한 경우,

ㅇ 1-2. 청구 개요, 라. 3) 4)

현행

- 3) 청구서를 접수한 우체국은 포스트넷 입력 뿐만 아니라 국제우체국(국제우편물류센 터)에 FAX로 청구내역을 반드시 통지
- 4) 국제우체국에서는 청구대상 우편물을 ~



변경

- 3) 청구서를 접수한 우체국은 포스트넷 입력 뿐만 아니라 교환국에 FAX로 청구내역을 반드시 통지
- 4) 교환국에서는 청구대상 우편물을 ~
- ㅇ 1-2. 청구 개요, 마. 1) 다)

현행

다) 청구인에게 국제우편물 반환 및 주소 변경·정정청구서(CN17)를 배달국가 현 지문자* 및 로마문자와 아라비아 숫자로 정확하게 적도록 하여야 함.



변경

다) 청구인에게 국제우편물 반환 및 주소변 경·정정청구서(CN17)를 배달국가 현지문 자* 및 영문과 아라비아 숫자로 정확하게 적도록 하여야 함.

ㅇ 1-2. 청구 개요, 마. 마) (2)

현행

청구서를 모사전송(팩스)으로 발송하는 경 우에는 청구서를 <mark>국제우체국</mark>으로 팩스



변경

청구서를 모사전송(팩스)으로 발송하는 경 우에는 청구서를 <mark>교환국</mark>으로 팩스

【 부록 - 우편업무 규정 】

□ 부록 64페이지 (우편업무 규정)

ㅇ 시행일자 변경

현행

[시행 2024. 10. 7.] [우정사업본부훈령 제951호, 2024. 10. 7., 일부개정.]



변경

[시행 2025. 2. 25.] [우정사업본부훈령 제961호, 2025. 2. 25., 타법개정.]

□ 부록 72페이지 (우편업무 규정)

ㅇ 제36조의2

현행

제36조의2(<mark>우정사업정보센터</mark>에서 발송하는 법원 진술최고서 답변 우편물) 우정사업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한다)에서 발송하는 법원 진술최고서 답변 우편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변경

제36조의2(우정정보관리원에서 발송하는 법원 진술최고서 답변 우편물) 우정정 보관리원(이하 "정보관리원"이라 한다) 에서 발송하는 법원 진술최고서 답변 우편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 야 한다.

ㅇ 제37조(요금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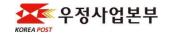
현행

다만. 우체국보험관련 통신사무의 우편 요금은 본부에서 보험사업특별회계와 우편사업특별회계 간에 전출금으로 일괄 계산하여 징수하고, 정보센터에 서 발송하는 법원 진술최고서 답변 우편물 중 우표를 첩부한 경우의 우 편요금은 통신사무 요금정산 시 징수 대상에서 제외한다.



변경

다만. 우체국보험관련 통신사무의 우편요 금은 본부에서 보험사업특별회계와 우편사업특별회계 간에 전출금으로 일괄계산하여 징수하고, 정보관리원에서 발송하는 법원 진술최고서 답변 우편물중 우표를 첩부한 경우의 우편요금은 통신사무 요금정산 시 징수대상에서 제외한다.



□ 부록 97페이지 (우편업무 규정)

ㅇ 제175조(우체국쇼핑 공급절차)

현행

④ 우체국쇼핑 접수 시 <mark>정보센터는</mark> 상 품대금을 공급업체, 공급우체국, 우체 국쇼핑 위탁운영기관 등으로 정산 처 리한다.



④ 우체국쇼핑 접수 시 <mark>정보관리원은</mark> 상 품대금을 공급업체, 공급우체국, 우체국 쇼핑 위탁운영기관 등으로 정산 처리한 다.



예금일반

【 제1편 금융 개론 】

- □ 34페이지 (제2장 금융회사와 금융상품 1-6. 금융유관기관)
 - 0 1-6-4. 한국거래소

변경(추가) 혀행 대체거래소(ATS, Alternative Trading System) '25년 3월 넥스트레이드(NXT)가 한국거래소(KRX) 외 주식을 거래 할 수 있는 국내 첫 대체거래소로 정식 출범되었다. 넥스트레이드에서는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종목 중 코스피200 과 코스닥150지수 구성 종목, 시가총액 및 거래대금 상위종목 등 800여개 종목을 거래할 수 있다. 단. 기업공개(IPO)종목의 경우. 상장 첫날에는 한국거래소에서만 거래가 가능하다. 넥스트레이드 출범으로 가장 큰 변화는 주식 거래시간 변화와 호가 유형의 다양화이다. 국내 주식 시장의 Pre마켓과 After마켓을 추가 운영으로 주식거래 시간 12시간으로 확대된다. 한국거래소(KRX)와 공통으로 운영하는 정규 거래시간 전·후로, 신설 08시 ~ 08시50분의 Pre마켓과 15시 30분 ~ 20시의 After마켓을 추가로 운영한다. 또한, 현재 국내 증시에서 제공하는 시장가와 4가지 지정가 외 중간 호가, 스톱지정호가 추가 된다. <넥스트레이드 출범에 따른 거래체계 변화> < 현병 > < ATS 会世 年 > NEW Pre마켓 08:00 - 08:50 ATS 08:30 - 09:00 KAX 08:30 - 09:00 1 시가 시가 [20분간 세일가 표함] [10분간 체장가 표출] 6.5h 12h 09:00 - 15:25 정규시장 09:00 - 15:20 정규 증가 15:20 - 15:30 증가 15:25 - 15:30 KRX After마켓 15:30 - 20:00 ATS 07:30-18:00 공시시간 현행동일 공시시간 07:30-18:00

출처: 금융감독원

□ 41페이지 (제2장 금융회사와 금융상품 2-2. 투자상품)

ㅇ 2-2-1. 펀드 ① 펀드의 구조

현행

변경

[그림 2-1] 계약형펀드의 운용 구조

[그림 2-1] 펀드의 운용 구조

□ 59페이지 (제3장 저축과 금융투자에 대한 이해 1-1. 저축의 기초)

o 1-1-3. 단리 vs. 복리

현행

예컨대 이자율이 연 4%에서 연 8%로 두 배가 되면 초기 100만 원이었던 자산은 3 백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약 3배 이상 증가하고, 이자율이 연 12%라면 자산은 거의 30배인 약 3천만 원이 된다.

변경

예컨대 이자율이 연 4%에서 연 8%로 두 배가 되면 초기 100만 원이었던 자산은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약 3배 이상 증가하고, 이자율이 연 12%라면 자산은 거의 30배인 약 3,000만 원이 된다.



ㅇ 3-5-2. 주문방법

혀햇

일반적으로 유가증권시장의 주식매매 단위는 1주인데, 최소 호가 단위 즉 최소 가격 변동폭(minimum tick)은 주가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어 일천 원 미만 1원, 오천 원 미만 5원, 일만 원 미만 10원, 오만 원 미만 50원, 십만 원 미만 100원, 오십만 원 미만 500원, 오십만 원 미만 500원, 오십만 원 이상 1,000원이다. 한편,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단기간 주가 급등락으로인한 주식시장의 불안정을 예방하고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일 최대가격변동폭을제한하는 가격제한(price limit)제도를 두고있다. 이에 따라 전일 종가 대비 ±30%이내에서 가격이 변동하여 상·하한가가 결정된다. 매매가 체결된 주식의 결제시점은 체결일로부터 3영업일로 되어 있다.

변경

일반적으로 유가증권시장의 주식매매 단위는 1주인데, 최소 호가 단위 즉 최소 가격 변동폭 (minimum tick)은 주가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어 2천 원 미만 1원, 5천 원 미만 5원, 2만 원 미만 10원, 5만 원 미만 50원, 20만 원 미만 100원, 50만 원 미만 500원, 50만 원 이상 1,000원이다. 한편,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단 기간 주가 급등락으로 인한 주식시장의 불안 정을 예방하고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일 최대가격변동폭을 제한하는 가격제한(price limit)제도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전일 종가 대비 ±30% 이내에서 가격이 변동하여 상· 하한가가 결정된다. 신규상장 주식의 경우 상 장일 당일 공모가 기준 60~400%로 가격변동 폭을 제한하고 있다. 매매가 체결된 주식의 결제시점은 체결일로부터 3영업일로 되어 있다.





□ 85페이지 (제3장 저축과 금융투자에 대한 이해 4-4. 주식과 채권의 비교)

0 4-4. 주식과 채권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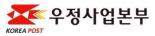
현행

그러나 배당금을 수령하는 기관투자가에게는 배당소득의 30%를 익금불산입 하기 때문에



변경

그러나 배당금을 수령하는 기관투자가에게는 배당소득의 30%를 <mark>입금불산입하기</mark> 때문에



【 제2편 우체국금융 제도 】

□ 168페이지 [제7장 예금관련법 1. 예금자보호 1-4. 보호한도]

ㅇ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보호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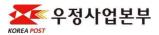
현행

아울러, 2023년 10월 17일부터는 추가로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중 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적립금(실예금자 별 보호)과, 보험계약의 사고보험금 및 연금저축(신탁·보험)도 각각 1인당 5천만 원(세전)까지 다른 예금과 별도로 보호하고 있다.



아울러, 2023년 10월 17일부터는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퇴직연금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실예금자별 보호)이 추가되었으며, 보험계약의 사고보험금 및 연금저축(신탁·보험)도 각각 1인당 5천만 원(세전)까지 다른 예금과 별도로 보호하고 있다.





【 제3편 우체국금융 상품 】

□ 201~202페이지 (제8장 우체국금융 상품 2-4. 체크카드 상품)

ㅇ 2-4-1. 개인형 상품

현행

- 3) 우체국 국민행복 체크카드
-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국가바우처를 한 장의 카드로 이용 가능한 상품
- 부가서비스는 A,B,C Type 선택이 가 능하며, 선택 Type에 따라 혜택(캐시 백 및 에코머니 포인트)제공
- 국내 전용 카드로 12세 이상 발급 가능
- 4) 우체국 우리동네^{plus} 체크카드
-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특화 서비스 를 제공하는 상품
- 부가서비스는 I, II, III Type 선택이 가능하며, 선택한 Type에 따라 캐시백 제 곳
- 국내 전용 카드로 12세 이상 발급 가능

변경(추가)

- 3) 우체국 국민행복 체크카드
-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국가바우처를 한 장의 카드로 이용 가능한 상품
- 부가서비스는 A,B,C Type 선택이 가능 하며, 선택 Type에 따라 혜택(캐시백 및 에코머니 포인트)제공
- 그린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내 전용 카드로 12세 이상 발급 가능
- 4) 우체국 우리동네^{plus} 체크카드
-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
- 부가서비스는 Ⅰ,Ⅱ, Ⅲ Type 선택이 가능하며, 선택한 Type에 따라 캐시백 제공
- 그린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내 전용 카드로 12세 이상 발급 가능



□ 227페이지 [제9장 우체국금융서비스 5. 제휴서비스]

o 5-3. 우체국CMS 업무

현행

CMS는 고객이 우체국에 개설된 제휴회사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고 그 입금 내역을 우정사업정보센터(우체국금융 IT운영담당)에서 입금회사로 실시간 전송하는 시스템이며, 입금된 자금은 우정사업정보센터에서 회사가 지정한 정산계좌로 일괄입금 처리한다.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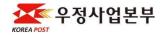
CMS는 고객이 우체국에 개설된 제휴회사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고 그 입금 내역을 우정정보관리원(우체국금융 IT운영 담당)에서 입금회사로 실시간 전송하는 시스템이며, 입금된 자금은 우정정보관리원에서회사가 지정한 정산계좌로 일괄 입금 처리하다.

○ 5-3. 우체국CMS 업무 〈표 9-14〉

현행	
구분	
제휴회사*	
고 객	
우 체 국	
우정사업정보센터	
-	



변경	
구분	
제휴회사*	
고 객	
우 체 국	
우정정보관리원	
	_



【 부록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부록 32페이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ㅇ 시행일자 변경

현행	변경
[시행 2023. 9. 22.]	[시행 2025. 2. 25.]

□ 부록 34페이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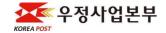
ㅇ 제10조(예금원부의 관리)

현행① 예금원부는 <mark>우정사업정보센터의 장</mark>

- (이하"센터장"이라 한다)이 기록하고 관리한다.
- ② 센터장은 예금계약의 성립·소멸, 예금 의 예입 및 지급, 그 밖에 예금에 필요한 사항을 예금원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변경

- ① 예금원부는 우정정보관리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기록하고 관리한다.
- ② <mark>원장</mark>은 예금계약의 성립·소멸, 예금의 예입 및 지급, 그 밖에 예금에 필요한 사항을 예금원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보험일반

【 제1편 보험개론 】

- □ 17페이지 [제2장 생명보험 이론 2. 생명보험의 기본원리]
 - ㅇ 2-4. 수지상등의 원칙

$P \times n = R \times a$	

(총보험료) = (사업비 등을 포함한 총보험금)

현행



변경

 $P \times n = R \times a$

(총 보험료) = (총 보험금)

- □ 24페이지 [제2장 생명보험 이론 5. 언더라이팅과 클레임]
 - ㅇ 5-2-1. 환경적 언더라이팅

현행

환경적 위험의 대표적인 항목으로는 피 보험자의 직업, 운전 차량의 종류, 취미 생활, 부업활동, 거주지 위험 등이 있다.



변경

환경적 위험의 대표적인 항목으로는 피보험 자의 직업, 운전 차량의 종류, 흡연, 음주, 취 미생활, 부업활동, 거주지 위험 등이 있다.

□ 47페이지 [제3장 보험윤리와 소비자보호 2. 보험범죄 방지활동]

ㅇ 2-1. 보험범죄란?

현행

보험범죄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보험 원리상 지급받을 수 없는 보험금을 수 령하거나 실제 손해액 대비 많은 보험 금을 청구하는 행위 또는 보험 가입 시 실제 위험수준 대비 낮은 보험료를 납 입할 목적으로 행하는 일체의 불법행 위로 연성사기와 경성사기로 구분할 수 있다. 과거에는 연성사기가 보험범 죄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최근에는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고의의 보험 사고를 일으키는 경성사기가 증가하고 있다.

변경(삭제)

보험범죄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보험 원리 상 지급받을 수 없는 보험금을 수령하거나 실제 손해액 대비 많은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또는 보험 가입 시 실제 위험수준 대비 낮은 보험료를 납입할 목적으로 행하는 일체의 불법행위로 연성사기와 경성사기로 구분할 수있다. 과거에는 연성사기가 보험범죄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최근에는 보험금을 편취할목적으로 고의의 보험사고를 일으키는 경성사기가 증가하고 있다.



□ 63페이지 [제4장 생명보험과 제3보험 2. 생명보험 상품]

ㅇ 2-2-3. 생사혼합보험(양로보험)

현행

2-2-3. 생사혼합보험(양로보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사망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망보험과 만기시까지 생존한 경우 만기보험금을 지급하는 생존 보험을 혼합한 보험으로 사망보험의 보장 기능과 생존보험의 저축기능을 동시에 가 진 생명보험이다. 대표적인 예로는 양로보 험, 연금보험, 교육보험 등이 있으며 요즘 판매 되는 대부분의 생명보험상품은 암 관 런, 성인병 관련, 어린이 관련 등 고객 성향 에 맞춰 특화한 생사혼합보험이다.

변경(삭제)

2-2-3. 생사혼합보험(양로보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사망보험과 만기시까지 생존한 경우 만기보험금을 지급하는 생존보험을 혼합한 보험으로 사망보험의 보장기능과 생존보험의 저축기능을 동시에가진 생명보험이다. 대표적인 예로는 양로보험, 연금보험, 교육보험 등이 있으며 요즘 판매 되는 대부분의 생명보험상품은 암관련, 성인병 관련, 이란이 관련 등 고객성향에 맞춰 특화한 생사혼합보험이다.



□ 99페이지 [제5장 보험계약법(인보험편) 8. 보험계약의 효과]

0 8-2. 보험자의 보험료 반화의무

현행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해 지되었거나 보험금지급이 면책된 경우에는 소위 보험료적립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상법 제736조)



변경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해 지되었거나 보험금지급이 면책된 경우에 는 소위 보험적립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 다.(상법 제736조)

□ 113페이지 [제6장 우체국보험 일반현황 4. 역할(사회공헌)]

ㅇ 4-5. 사회공헌 관련 세부사업

현행		
<丑 6-5	<표 6-5> '24년 우체국공익재단 세부사업	
분야	세부사업	
(우정) 우정 인프라 기반 공적역할 강화	• 우체국 사회공헌 지원 • 복지등기 서비스 전국 확산	
(사회) 복지 소외계층 지원	 저소득 장애인 우체국 암보험 발달장애인 카페 지원 무의탁환자 야간 간병 지원(예금위탁) 전국 휠체어 농구대회 개최 소아암 환자・가족 지원 	
(미래) 미래세대 육성	우체국 청소년 꿈보험 지원 자립준비청년 식비 지원(예금위탁) 우체국 희망 장학금 지원(예금위탁) 장애 가정 아동 성장 멘토링 지원(예금위탁)	
(환경) 지속 가능 친환경	 다회용컵 <mark>리사이클 지원</mark> 폐의약품 회수 지원 	



변경 <표 6-5> '25년 우체국공익재단 세부사업 분야 세부사업 (우정) 우정 • 우체국 사회공헌 지원 인프라 기반 • 복지등기 서비스 공적역할 • 안부살핌 소포 강화 • 저소득 장애인 우체국 암보험 (사회) 복지 • 발달장애인 카페 지원 소외계층 • 무의탁환자 야간 간병 지원(예금위탁) • 전국 휠체어 농구대회 지원 지원 • 소아암 환자 • 가족 지원 • 우체국 청소년 꿈보험 지원 (미래) • 자립준비청년 식비 지원(예금위탁) 미래세대 • 우체국 희망 장학금 지원(예금위탁) 육성 • 장애기정이동성장멘토링지원예금위탁 • 다회용컵 순환 체계 운영 (환경) 지속 • 폐의약품 회수 지원 가능 친환경

【 제2편 우체국보험 제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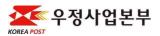
□ 133페이지 [제8장 우체국보험 및 언더라이팅 3. 보험계약의 청약 및 언더라이팅(청약심사)]

ㅇ 3-2-2. 계약선택의 기준이 되는 세가지 위험

현행			
<표 8-19> 계약선택의 기준이 되는 세 가지 위험			
신체적 위험	환경적 위험	도덕적 위험(재정적 위험)	
· 피보험자의 음주 및 흡연 여부, 체격· 과거 병력· 현재의 병증(病症)	•직업 및 업무내용 •운전여부 •취미활동	・보험가입금액의 과다여부 ・피보험자와 수익자의 관계 ・과거 보험사기 여부	



변경(삭제)			
<표 8-19> 계약선택의 기준이 되는 세 가지 위험			
신체적 위험	환경적 위험	도덕적 위험(재정적 위험)	
* 피보험자의 음주 및 흡연 여부, 체격 * 과거 병력 * 현재의 병증(病症)	+ 직업 및 업무내용 + 운전여부 + 취미활동	* 보험가입금액의 과다여부 * 피보험자와 수익자의 관계 * 과거 보험사기 여부	



【 제3편 우체국보험 상품 】

□ 311페이지 [제10장 우체국보험 상품 5. 우체국보험 관련 세제]

ㅇ 5-3-2. 연금저축보험 중도해지 또는 연금수렁시 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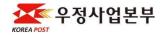
현행

다만, 연간 연금액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할 수 있고, 1,5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 과세를 또는 15% 분리과세를 선 택할 수 있다.



변경

다만, 연간 연금액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할 수 있고, 1,5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 과세 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 부록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 부록 22페이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ㅇ 시행일자 변경

현행	변경
[시행 2023. 9. 22.]	[시행 2025. 2. 25.]

- □ 부록 24페이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ㅇ 제10조(예금원부의 관리)

현행 변경 ① 예금원부는 우정사업정보센터의 장 (이하"센터장"이라 한다)이 기록하고 관리한다. ② 예금원부는 우정정보관리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기록하고 관리한다. ② 센터장은 예금계약의 성립・소멸, 예금 의 예입 및 지급, 그 밖에 예금에 필요한 사항을 예금원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예금계약의 성립・소멸, 예금의 예입 및 지급, 그 밖에 예금에 필요한 사항을 예금원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 제도, 상품 등은 게시된 최종 수정내역을 반영한 학습교재 기준으로 출제합니다.